

의안번호	제 30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유재목,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을 분명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를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산학융합지구”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로,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로, “산학융합지구”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로, “산학융합 촉진 지원”을 “산학융합의 촉진을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활성화 지원)” 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로, “수행 할” 을 “수행할”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운영” 으로, “사항” 을 “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 및 거주환경,” 을 “교통, 거주환경 및”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에 도지사가” 를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을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를 “(지도·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한다.
-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게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 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

원회”로, “둘”을 “구성·운영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제1호 중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

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중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과건해 사업을 지원”을 “과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산학융합지구”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로,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 한다)의 특화업종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업종을 말한다.</u> 3.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u> ----- ----- <u>관하여</u> --- ----- -----.
제4조(책무) <u>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u>	제4조(도지사의 책무) <u>충청북도지사</u> ----- <u>충청북도 산</u>

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
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
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
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 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융합지구 ----- 산학융합의
촉진을 지원하는 -----

---.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
성화 기본계획) ① -----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 충청북도 산
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

② -----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관련 기관-----
-----.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
성화 사업) ①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를 위하여 ----- 수행
할 -----.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운영
----- 사업
2. ~ 4. (현행과 같음)
5. 교통, 거주환경 및 -----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
여 -----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게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할 ---.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수립
2. -----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

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

제13조(포상)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

있다고 인정되는 <u>사람이나 단체</u> <u>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u> <u>정하는 바에 따라</u> 포상할 수 있 다. <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u> <u>에 필요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 <u>한다.</u>	----- <u>자에게 「충청</u> <u>북도 포상조례」</u>----- ----- --. <u><삭 제></u>
---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0. 19.>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⑤ (생략)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발생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